



별안 1 (공고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386 호

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 용두토지구획  
정리지구에 대하여 별지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 (환지  
확정도) 과 같이 환지 확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 
3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응고한다  
별지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 
사무과, 동대문구청건설과, 성동구청건설과 에 비치  
하고 관계인에게 통람에 공한다.

1964. 9. 30.

서울특별시장 윤치영

별안 2

수신. 수신취참조

발신. 서울특별시장

제목. 갈음

1. 서울도시계획사업 용두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 
소재하는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동지구의  
토지구획정리 실시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환지확정  
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3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 
통지합니다

2. 환지확정에 대한도면은 당시도시계획국

74

서무과. 동대문구청건설과 및 성동구청 건설과 이 비치리  
고 통란에 공합니다

유청. 환지확정지령서 1부

수신취. 별지 환지확정지령서 의 각 환지 턴지 변 소 유자에  
계 이기 통지 함

별안 3.

수신. 수신취참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신. 서울특별시

제목. 같음.

당시에서 실시한 서울 도시계획사업 용두도지  
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36 조 의 규정에  
의거 1964. 9. 20. 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386 호 로써  
환지취분 하였기 이에 통지 함다

유청. 1. 공고문사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부

2. 환지확정도    1매

~~3. 신청서류도    1매~~

수신취: 동대문 등기소장 (관할구역별)  
성동 등기소장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별안 4.

수신. 수신취참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신. 서울특별시

제목. 같음

1. 당시에 실시한 도시계획사업 용두리주획경  
리지구에 대하여 1964. 1. 30. 자 서울특별시공고 제  
986호로서 별첨된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 
환지허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람.

가. 별첨 공고문을 사본하여 귀청 및 소관동  
사무소에 제출하여 일반에 주지시킴

나. 별첨 환지 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도면을  
귀청 건설과 또는 부속화리정과에 비치하여 관계  
인에게 종람이 공할 것.

다. 본 용두리주획 <sup>용두리주획</sup>중 현재 발급되고 있는 환지에  
정지 지정증명 <sup>용두리주획</sup>분 환지증명 (환지확정 면적, 신동명,  
신리번을 명기 함) 으로 발급함

- 유첨. 1. 공고문 1부  
2. 환지확정지정서 1부씩  
3. 환지확정도 1매

수신처. 용대문구청장 (각관할배해당분)  
성동구청장

별안5.

수신. 공보실강      발신. 도시계획국장

제목. 갈음.

당시에 서 시행한 용두토지구획령의 지구  
에 대한 환지처분을 별지 사본과같이 응고되었  
은 시보에 게재토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
유침. 응고문사본 1 통

適用法條

都市計画法 第36條 (標地處分) 標地處分은標地計劃

區域의全部에對하여工事が完了한後 適譯함이

이를 하여야 한다 但該令에 特別한規定이 있는

場合에는標地計劃區域의全部에對하여工事を  
完了된後에標地處分을 할 수 있다

其外 執照가 未. 完의 場合에 依한標地處分

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完了한 適譯함이 그

뜻을 通知 하여야 한다 .